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9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조은희 · 이성권 · 서천호

김용태 · 박상웅 · 김재섭

서명옥 · 이만희 · 윤상현

박성훈 · 박충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자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

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포함한다)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교부금 재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교부율”을 “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율”을 “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를 “교부금의”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중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 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 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생 략) <신 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 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포함한다)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금액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 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전년도 교부금 예 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교부금 재 원으로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 항과 같음)
③ · ④ (생 략)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 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예산 계상) ① (생략)

제4조(교부금의 보정) ① -----

-----제3조제2항제1호
에서 정한 교부금-----
-----.

② -----교부금-----

-----.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4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 계상) ① (현행과 같

